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582
----------	-------

발의연월일 : 2019. 11. 5.

발의자 : 황주홍 · 이양수 · 윤준호

김성찬 · 오영훈 · 박주현

김태흠 · 박완주 · 손혜원

손금주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협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 제4항 후단 등).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후단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6조제2항 후단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등에 있어서는”을 “등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간척지활용사업에 착수하지”를 “간척지활용사업을 시작하지”로 한다.

제12조제2항제5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사업에 착수한”을 “사업을 시작한”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9호 중 “착수”를 “시작”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수 할”을 “돌려받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수하려는”을 “돌려받으려는”으로 한다.

제32조 전단 중 “시행함에 있어서”를 “시행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34조제1항제4호 중 “간척지활용사업에 착수하지”를 “간척지활용사업을 시작하지”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중 “적용에 있어서의”를 “적용에서”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p>제8조에 따른다.</p> <p>③ · ④ (생 략)</p> <p>제11조(간척지 활용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변경) ① · ② (생 략)</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p> <p>1. 사업시행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u>간척지활용사업에 착수하지</u> 아니한 경우</p> <p>2. · 3. (생 략)</p> <p>제12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p> <p>② 실시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4. (생 략)</p> <p>5. 단계별 조성계획(간척지활용 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사업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u>한한다</u>)</p> <p>6. ~ 8. (생 략)</p>	<p>-----.</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11조(간척지 활용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변경)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p> <p>-----</p> <p>-----</p> <p>-----.</p> <p>1. -----</p> <p>-----</p> <p>-----</p> <p>-----</p> <p>-----</p> <p><u>간척지활용사업을 시작하지</u></p> <p>2. · 3. (현행과 같음)</p> <p>제12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p> <p>-----</p> <p>-----</p> <p><u>한정한다</u></p> <p>6. ~ 8. (현행과 같음)</p>
--	--



1. ~ 18. (생 략)	-----.
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u>착수·변경 및 완료</u> 사실의 신고	1. ~ 18. (현행과 같음) 19. ----- ----- ----- ----- -----시작----- -----
20. ~ 22. (생 략) ② (생 략)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같은 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 할 경우에 <u>한한다</u> .	20. ~ 2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 ----- ----- ----- ----- ----- ----- ----- ----- ----- ----- ----- ----- ----- ----- ----- ----- ----- -----한정한다.
② ~ ④ (생 략) 제28조(지원금의 환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7조제3항에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지원금의 환수 등) ① -- ----- -----



<p>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에 포함된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 3. (생 략)</p> <p>4.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u>간척지활용사업에 착수하지</u> 아니한 경우 ② · ③ (생 략)</p> <p>제37조(별 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생 략)</p>	<p>----- ----- -----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u>간척지활용사업을 시작하지-----</u> 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37조(별 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	--